

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또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처분 기준을 정하며, 실제 제도 운영내용과 달리 적시된 제명을 정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더불어 수도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가능 지역에 대한 명칭 명확화
(안 제2조의2, 안 제3조 및 별표 3)

공장설립제한지역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공장설립을 승인하며, 이 지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명명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 지역의 명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 1) 수도법 제14조의2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제조·수입·판매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항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2) 제조업체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요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시 혼란을 예방하여 신뢰성을 제고

다. 검사기관 지정 절차·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규정 마련(안 제3조의4 및 안 제3의5 신설)

- 1)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이 환경부령에서 수도법으로 상항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른 세부적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
- 2)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이 환경부령에서 수도법으로 상항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적정운영 유도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시 세부적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

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3)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제도(법 제2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강화 상세방안으로 수질측정의 주기, 항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망개선계획 수립 포함 사항에 대해 명기함

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5 내지 제12조의7)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신설(법 제21조의4)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상세 기준을 제시함.

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의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도사업자의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사.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규정(안 제17조의3)

수돗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파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

아.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22조의3제4항)

1)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가 마지막 수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검사주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게 되어 저수조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 수질검사 마지막 일이 당초 6월말일인 경우, 6월20일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내년 6월19일로 조정되어 검사주기가 10일 앞당겨짐

2)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를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개정하여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현상을 예방하여 관리의 편리성 제고

자.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관청 명확화(안 제23조의2제5항)

1) 저수조청소업의 경우 신고한 사항중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 신고한 관청 또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관할 관청중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신고시 불편 및 혼란 야기

2)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새로운 행정구역의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명문화하여 불편 및 혼란을 예방하고 편의 제공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 자격 요건 구체화(안 제25조의3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자 지정요건을 갖추거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명확히 함

카.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제2호)

군 단위 이하 지역의 상수관망의 기술진단은 일반기술진단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진단까지 실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전문기술진단 실시 대상에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도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타.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31조의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진단 종료 30일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기술진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및 직무범위,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
(안 제45조, 제45조의2)

상수도관망의 운영·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법 제25조의2)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 상세안을 마련함.
제도 운영을 위한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 마련이 필요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의3) 중 “별표 2의 2”를 “별표 2의4”로 하며,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의 취소, 제조·수입·공급·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설비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2.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3. 신청기관의 자체 시험업무처리규정 1부

4. 그 밖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 4서식”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수자원공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는”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2의3과”를 “별표 2의5와”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상수도관망의 노후가 심한 지역
3. 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이 분포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4. 수질측정 결과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지역

②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치, 범위 등 일반 현황
2. 관망도, 관중, 매설연수,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 시설 현황
3.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신청 사유
4. 수질사고 및 민원 발생현황
5. 정수장, 배수지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현황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 또는 해제 사유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관리) ①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은 별표3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관망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의 노후상수도 관망의 상태 평가 결과

2. 제1호에 따른 노후상수도관망의 연차별 교체 또는 개량 계획

3.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성명 또는 대표자
3. 사무실 소재지

4. 영 별표 2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 변경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의6(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이 조에서 “운영관리사”라 한다)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혹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재교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의3(수수료)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즉시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라 수질기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위기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2조의3제4항 중 “1년 이내에”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

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2제6항 중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6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4항”을 “제55조제5항”으로,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6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수도시설 운영요원 중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교육과정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기술진단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법 제74조의2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평가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제30조 중 “별표 8”을 “영 제65조의2”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8”을 “영 제65조의2”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업무가 종료되기 30일 전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명시된 각 항목들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진단 결과 평가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기술진단의 적정성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검토기관에게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한다.

별표 2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2의5,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제3조의3 관련)”을 “(제3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중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

를 각각 별지 제6호의4서식 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 까지 및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25조의3, 제29조, 제31조의3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2조의7,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별표 3의3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3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인증취소			
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별표 2의3]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호	지정취소			
나.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4 제2호	지정취소			
다.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3호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허용한 경우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시료의 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시료검사를 하였을 때 검사 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기술인력을 다른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4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3의3]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제12조의3 관련)

구 분		수질측정 방법
1. 검사 주기		월 2회 이상
2. 검사 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및 탁도
3. 검사 방법	가. 시료 채취 방법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수도꼭지의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관망과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나. 수질 검사 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3의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로 감경할 수 있다.

2) 영업정지는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 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3.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6호	등록취소	

[별표 5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 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본부(원) 주소	
	시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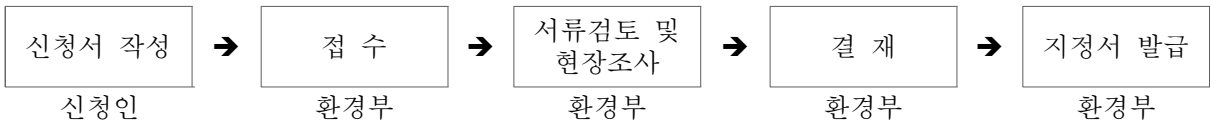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시험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나.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다. 신청기관의 자체 시험업무처리규정 1부 라. 그 밖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앞 쪽)

제 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표자 :
4. 본부(원) 주소:
5. 시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귀 기관을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 변경사항>

[illegible]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본부(원) 주소	
	시험실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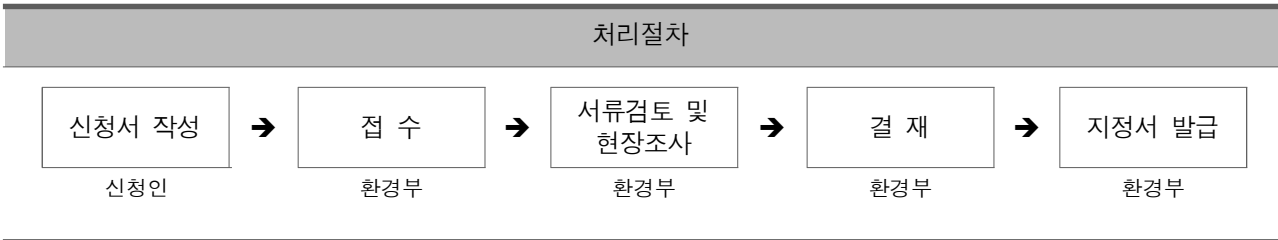
「수도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관망관리대행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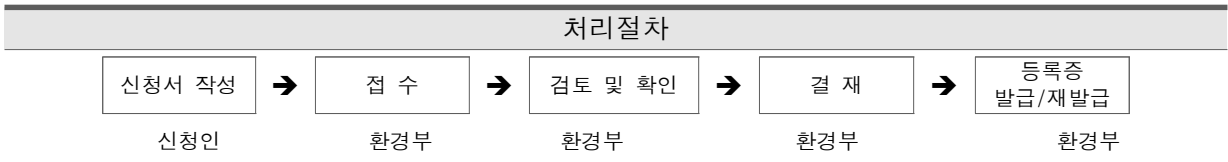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신청내용	등록신청 구분	• 법 제21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 •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 사업[] •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사업[] •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의 사업[]		
	변경등록, 재발급신청 사유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상호·명칭 변경[],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인력·장비 현황 변경[], •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분실[], 훼손[]		

「수도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증 변경신청의 경우 가. 등록증 나. 변경신청 사유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 상수도관망의 세척 ☐ 누수관리 ☐ 상수도관망 점검정비			
등록번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 구분			
등록 연월일			
「수도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또는 제12조의5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직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 보고서

1. 상황 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시(요일)

나. 시설명 :

다. 먹는물 수질기준 위반 내용

○ 항목

○ 농도

라. 먹는물 수질기준 위반 원인

○

2. 피해규모

가. 영향지역:

나. 영향을 받는 급수인구(가구수):

다. 재산피해 등 기타

3. 건강위해 가능성 :

4. 조치계획

가. 비상복구, 수질검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

나. 비상급수 방안

○

다. 주민행동요령

5.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

6. 조치계획의 적정성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기간 입학 ~ 졸업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	기관명	이수기간 ~	

신청 내용	자격등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급
	자격요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급 제 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수도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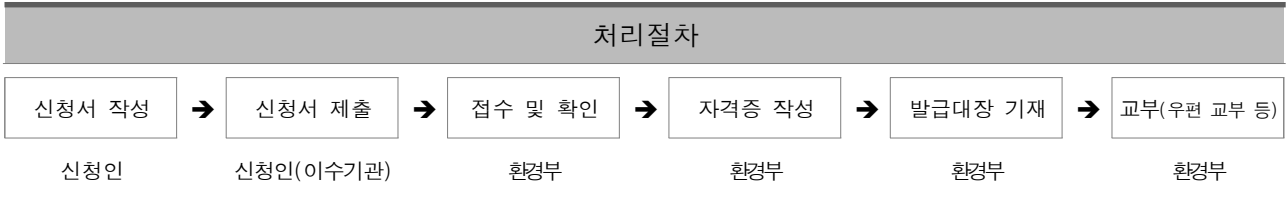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관련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1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 과목				
소 계				
선택 과목				
소계				
합계				

경력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		
		~		
		~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자격등급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급		
	최초 발급 받은 상수도관망시 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번호		발급연월일	
	이수기관			
	재발급 신청사유			

「수도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신청인		신청인(이수기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표지)

(표지뒷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환경부

80mm×130mm(인쇄용지 120g/㎡)

주의사항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이 자격증을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 보여야 합니다.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인적 사항, 주소, 자격취득 사항, 취업 중인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0mm×130mm(인쇄용지 120g/㎡)

(제2면)

신상변동사항(제3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 제

번호

성명:

등급:

생년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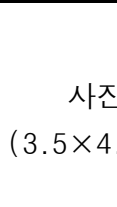
주소:

자격취득일: 년 월 일

교부년월일: 년 월 일

사진

(3.5×4.5cm)



환 경 부 장 관

직인

※ 소정의 직인, 실인 및 철인(천공)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80mm×130mm(인쇄용지 120g/m²)[illegible]

80mm×130mm(인쇄용지 120g/m²)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명부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	성 명(한자)		생년월일		사진 (반명함판) (3cm×4cm)
	주 소 (전화번호 :)				
	자격 현황	자 격 등 급	자 격 번 호		취 득 일
학 력	학 교 과 년(졸업·수료)				
근 무 기 간	근 무 처			기록자 인	
	사무소명	등록번호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m²]